

# 2015년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

## 주요 내용

■ 가격안정화장치 개선방안 ..... 1

■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도입방안 ..... 10

■ 과다호가부담금 징수기준 완화 ..... 18

※ 동 제도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 
재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.

○ 문의처 : KRX 파생상품제도부 이메일([d.rules@krx.co.kr](mailto:d.rules@krx.co.kr))

- 가격제한폭 개선 : 051-662-2792~2799

- 장중 위탁증거금제도 도입 : 051-662-2805, 2795

## 2015. 3

### 한국거래소

(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)

# I. 가격안정화장치 개선방안

I

##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(안)

### 1 개요

- (적용대상 : 주식관련 파생상품) 코스피200선물, 코스피200옵션, 스타지수선물, 주식선물, 주식옵션, 섹터지수선물, 변동성지수선물
  - 협의대량거래의 일중가격제한범위\*도 경쟁거래의 일중 가격제한범위와 동일하게 적용
    - \* 협의대량거래 신청 시 가격범위(직전체결가 $\pm a$ )와는 다른 개념으로, 당일 중 협의대량거래 신청 가능한 최대가격범위를 의미
    - \*\* 예) 협의대량거래의 직전체결가격이 상한가인 경우,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는 최대 상한가까지 밖에 설정할 수 없으나,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도 확대
  - “선물스프레드거래” 및 “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”은 예외로 현행과 동일한 비율 유지 (가격제한폭 고정)
- (단계별 적용비율) 상품별 가격제한폭을 3단계로 구분·확대

상품	현행	개선		
		1단계	2단계	3단계
지수상품	코스피200선물	$\pm 10\%$	$\pm 8\%$	$\pm 20\%$
	코스피200옵션**	$\pm 15\%$		
	스타지수선물	$\pm 10\%$		
	섹터지수선물	$\pm 10\%$		
	변동성지수선물	$\pm 30\%$		
주식상품	주식선물	$\pm 15\%$	$\pm 10\%$	$\pm 30\%$
	주식옵션**	$\pm 18\%$		

\* 해당비율을 곱하여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행 산출방법으로 호가가격단위 조정

\*\* 옵션(코스피200옵션, 주식옵션)의 경우, 기초자산 전일종가 뿐만 아니라 변동성 변화도 고려하여 제한폭 설정(상한가 방향 +50%, 하한가 방향 -50%)

## 2 가격제한폭 확대요건

① **(기준종목 가격급변)** 선물 “기준종목”의 체결가격<sup>\*</sup>이 상·하한가에 도달할 경우,

- 그 시점으로부터 5분<sup>\*\*</sup>이상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

\* 스프레드의 제약정가격은 제외(개별 선물종목 체결가격만 고려)

\*\* 5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중단, 필요적중단으로 재개시에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거래를 재개

(예) 13:05: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:10: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:09:00초에 필요적중단(주식CB)이 발생하여 13: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,  
⇒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확대

### ▶ (기준종목) 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

- 해당종목이 당일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인 경우 전일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은 종목

\* 전일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거래량 비교 대상에서 제외

### ▶ (대상상품) 선물 기준종목이 “확대요건”에 도달할 경우, 관련 선물종목(기타월물 등) 및 옵션종목의 가격제한폭 동시 확대

- 변동성지수선물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을 기준으로 판단

상품군	기준상품	동시확대상품
코스피200지수상품	코스피200선물	코스피200옵션, <b>변동성지수선물</b>
스타지수상품	스타지수선물	-
섹터지수상품	섹터지수선물	-
개별주식상품	개별주식선물	주식옵션

\* 상품군은 시행세칙 별표19의 증거금 산출을 위해 구분한 상품군과는 상이

- ▶ **(방향별 적용)** 상품 특성에 맞춰 상승방향(상한가)과 하락방향(하한가)을 구분하여 가격제한폭 확대
  - 기준종목 선물가격 상승(하락)으로 “확대요건” 도달시,
    - 1) 선물[변동성지수선물 외] : 기타월물 모두 상승방향(하락방향)
    - 2) 콜옵션 : 상승방향(하락방향)
    - 3) 풋옵션 : 하락방향(상승방향)
    - 4) 변동성지수선물 : 양방향
- ▶ **(적용시간)** 09:05~15:05(가격제한폭 확대시점 기준, 판단시각 기준 9시~15시)
  -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: 09:05~거래시간 종료 시까지
- ▶ **(조치사항)** “확대요건” 충족 시 별도의 단일가거래시간 부여 없이 가격제한폭 확대

**[2] (주식CB 발동)** 주식시장에서 CB 발동 시 발동을 야기한 지수수준을 초과하는 비율<sup>\*</sup>로 대상상품 가격제한폭 확대

\* 해당 값이 복수일 경우는 절대값이 작은 값 적용

**(예1)** 지수선물가격이 8%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**17% 하락**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

⇒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**20%**로 확대  
(지수 : -17% → 파생 가격제한폭 : -20%)

**(예2)** 선물가격이 8%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**9% 하락**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

⇒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**15%**로 확대  
(지수 : -9% → 15 vs 20 → 파생 가격제한폭 : -15%)

- ▶ **(대상상품 및 방향)** 코스피200선물(스타지수선물)의 하락방향,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,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,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
- ▶ **(판단시간)** 주식시장 CB발동시간과 동일(9시1분~14시20분)
- ▶ **(조치사항)** 대상상품 20분간 거래중단하고, 가격제한폭 확대 후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재개
  - 다만 가격제한폭이 당해수준으로 이미 확대되어 있는 경우는 가격제한폭 확대 없이 20분간 거래중단 및 10분 단일가거래로 재개

**(예)** 선물가격제한폭이 이미 ±15%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8% 하락하여 CB가 발동되는 경우,  
⇒ 선물가격제한폭은 그대로 유지

### ③ **(동시발생)** 기준종목 가격급변 및 주식CB발동이 동시발생할 경우, 주식CB 발생요건에 따른 가격제한폭 적용

-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 도달 후 “5분경과 이전에” 주식CB 발동시, 단일가거래부터 가격제한폭 확대

## 1 가격제한폭 확대시 호가의 처리

- (실시간 가격제한 적용해제 등)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“실시간가격제한” 해제하고,
  - 해당시점으로부터 시장가호가,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가격 미지정호가의 접수도 거부
- (시장가호가 재의제)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<sup>\*</sup>한 후 추가적인 호가 접수

\* 일중 상·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·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,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필요

(예1) 매수지정가호가가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 원래 상한가+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 상한가 제한으로 일중상한가에 의제  
 ⇒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 시 매수시장가호가를 “최우선 매수호가(확대전 상한가)+1틱”으로 재의제 후 호가를 접수

(예2) 직전체결가격이 상한가이고,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
 ⇒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어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

- (조건부지정가호가) 기접수된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 시간에만 시장가로 전환되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

- (최유리지정가호가)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에 체결 또는 특정 가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
- (FOK, IOC 등 조건이 부여된 호가) 기접수된 당해호가들은 모두 체결 또는 취소되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
- (호가의 정정)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최유리지정가 또는 시장가로의 호가정정이 불가

«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호가의 정정 방법 »

구분	정정 유형	일반상황	확대상황
동일 종류 호가간 정정	지정가 → 지정가	가격변경시 허용	좌동
	조건부지정가 → 조건부지정가	가격변경시 허용	좌동
	최유리지정가 → 최유리지정가	가격변경시 허용	불허
	시장가 → 시장가	불허	불허
다른 종류 호가간 정정	지정가 → 조건부	허용	좌동
	지정가 → 최유리지정가	가격변경시 허용	불허
	지정가 → 시장가	허용	불허
	조건부지정가 → 지정가	허용	좌동
	조건부지정가 → 최유리, 시장가	허용	불허
	최유리지정가 → 지정가	가격변경시 허용	좌동
	최유리지정가 → 조건부	허용	좌동
	최유리지정가 → 시장가	허용	불허
	시장가 → 지정가, 조건부	허용	좌동
호가의 조건 부여 유형	시장가 → 최유리지정가	허용	불허
	지정가 → 지정가(조건 有)	가격변경시 허용	좌동
	지정가 → 최유리지정가(조건 有)	가격변경시 허용	불허
	최유리지정가 → 최유리지정가(조건 有)	가격변경시 허용	불허
	지정가, 조건부, 최유리 → 시장가(조건 有)	허용	불허
	시장가, 조건부 → 지정가(조건 有)	허용	좌동
	시장가, 조건부 → 최유리지정가(조건 有)	허용	불허
	최유리지정가 → 지정가(조건 有)	가격변경시 허용	좌동

## 2 정보제공 관련사항

- (거래소 → 회원) 거래소는 회원에게 매거래일 장종료 후 3단계 가격제한폭 정보를 포함한 종목정보를 제공하고,
  - 장중 가격제한폭 요건 도달 시 가격제한폭 확대 예고<sup>\*</sup> 및 확대 전문 전송
    - \*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시각 포함(회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)
    - \* 가격제한폭 확대전 잔존시간(4분, 3분, 2분, 1분)이 남은 경우, 그 정보를 시장에 안내
- (거래소 → 시장(위탁자)) 가격제한폭 확대요건 도달 시, 해당 상품과 가격제한폭을 시장에 안내

## 3 수탁 관련사항

- (호가적합성 점검의무 면제) 장중 가격제한폭이 변경되는 경우, 해당상품에 대한 '가격제한폭에 대한 호가적합성 점검 의무'가 면제됨
- (조건부지정가호가의 입력제한)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상한가의 매수호가나 하한가의 매도호가 입력을 제한<sup>\*</sup>하는 경우,
  - "호가 점검시점"의 상·하한가를 적용  
(당시 단계별 상한가가 8%일 경우 이를 그 시점의 상한가로 적용)
    - \* 장중 단계별 상하한가에 입력된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시간에 시장가호가로 전환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입력이 제한됨
- (위탁금액 산정기준) 옵션 시장가 매수 주문 등<sup>\*</sup>에 대한 증거금 산출을 위해 위탁금액 산정시 항상 가격제한폭 최대 변경단계(3단계)의 상한가를 적용\*

- 예를 들어,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주문제출시점 가격제한폭이 8% 이더라도 최대 변경단계인 20%를 적용하여 위탁금액을 산출
  - \* 옵션 매수 시, 시장가주문, 조건부지정가주문, 최유리지정가 주문 등을 입력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산출 시, 위탁가격을 상한가로 적용
- (증거금률) 특이사항 없음
- (기본예탁금 인출을 위한 옵션매수자의 하한가 제출) 옵션 매수미결제약정 보유자가 기본예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시점의 하한가로 매도주문을 제출 필요

※※ 시황 급변시 위탁증거금이 실제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으니,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

## 4 기타 반영사항

- (주식CB 발생 시 시장조치) 주식관련 파생상품<sup>\*</sup>의 거래를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전환(현행 유지)
  - \* 코스피시장 CB : 코스피200선물 · 옵션, 섹터지수선물, 변동성지수선물, 주식선물 · 옵션,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,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, 주식선물스프레드,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
  - 코스닥시장 CB : 스타지수선물,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
- 코스피지수(코스닥지수)가 20% 이상 하락하여 당일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당일 주간시장 거래도 종료\*
  - \* 야간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시간 변경 또는 임시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

- (선물CB제도 폐지)** 코스피200선물, 섹터지수선물, 스타지수선물 가격변동에 의한 선물CB제도는 폐지(단계별 가격제한폭으로 대체)
- (동시호가 배분)** 1단계, 2단계 상·하한가에서는 동시호가 배분 미적용하고 3단계에서만 동시호가 배분을 적용
  - 1단계 또는 2단계의 상·하한가가 3단계의 상·하한가가 20%(30%)와 동일한 경우는 동시호가 배분 적용
- (시장가호가 의제약정가격 산출)**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결정시,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상·하한가를 적용

## II. 파생상품시장의 장중추가증거금제도 도입안

### 1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징수(안)

- ◆ ① 거래소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시 회원이 위탁자의 결제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 
② 회원은 장중 위탁증거금을 산출하고, 결제위험이 높은 위탁자에 대해 수탁 거부 및 부족액을 징수
- (대상 계좌) 모든 위탁계좌 (사전 및 사후위탁증거금\* 계좌)  
\*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포함
- (추가 증거금 산출 요건) 코스피200 지수가 기초자산기준가격 (전일종가) 대비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
- (가격변동)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%\* 이상 변동  
\* '15.3.13 기준 코스피200 : ±4.8%
  - (기준시간) 거래소는 9~14시까지 매 정각 기준 가격변동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
    - \* 9시는 9시1분 기준 가격변동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
    - \*\* 기준시간은 수능일 등으로 거래시각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시간도 장개시+1분, 장개시+1시간, 장개시+2시간 등으로 순연하는 등 시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(증거금 파라미터 전송) 거래소는 요건 부합 시 전 회원사에 해당 시각 기준 증거금 파라미터("이하 장중파라미터")를 전송
- 추가적으로 가격변동요건 발생시점부터 당일 14시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

- (산출용)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각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최초로 송신하는 파라미터 →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여부 결정, 장중 증거금산출\*, 인출가능금액 산출 등에 사용
  - \* 장중 사전위탁증거금,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, 전일 장종료 시점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계좌가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 매도 등으로 추가예탁 해소여부 등의 산출 또는 판단 시 적용
- (점검용) 거래소는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산출 이후 당일 14시\*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도 증거금 파라미터를 산출하여 제공 →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 해제용으로만 사용, 다만, 회원사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장중 추가증거금을 부과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

\* 수능일 등 시장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#### <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시점>

가격변동요건 도달 시점	9시	10시	11시	12시	13시	14시	
9~14시 미발생			전문 전송 없음				
9시 최초 발생	●	○	○	○	○	○	
10시 최초 발생	×	●	○	○	○	○	
11시 최초 발생	×	×	●	○	○	○	
12시 최초 발생	×	×	×	●	○	○	
13시 최초 발생	×	×	×	×	●	○	
14시 최초 발생	×	×	×	×	×	●	

- \* ● : 추가예탁액 부과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(산출용)
- : 추가예탁액 부과 해제 여부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(점검용)

- (장중 증거금 산출) 회원은 장중파라미터를 최초로 수신하는 경우 해당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액\*("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")을 산출
  - (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)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(유지위탁 증거금률 적용) + 당일결제금액\* + 익일결제예정금액\* (장중 당일차금 + 장중 갱신차금 + 장중옵션수수대금)

\* **당일결제금액**: 수수일이 도래한 결제금액(최종결제대금은 제외)으로서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

**장중당일차금**: 당일의 약정가격(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 포함)과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기각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**장중갱신차금**: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 시각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**장중옵션순매수대금**: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시각까지 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

- 통화, 금리 등 주식상품이 아닌 상품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거나 결제이행이 필요한 경우 장중파라미터를 이용해 유지위탁증거금 산출
- 장중 사전위탁증거금 및 위험노출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용으로 제공된 장중파라미터를 이용하거나 전일 장종료시점 기준 증거금파라미터를 이용 가능

#### 《장중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접수이후 증거금 산출 방법》

기제출 미체결 주문	신규주문	미결제약정	결제예정금액
Ⓐ		Ⓐ	
Ⓐ		Ⓑ	
Ⓑ		Ⓑ	
Ⓑ		Ⓐ	

Ⓐ : 전일장종료시점 기준 증거금파라미터 적용

Ⓑ : 당일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적용

(증거금 장중 부과요건<sup>\*</sup>) 예탁총액<sup>\*\*</sup> <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

\*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 기준

\*\* 결제시한 도래전의 대용증권 매도금액 가산

(증거금 추가예탁액)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 (“이하 장중위탁증거금액”)에서 예탁총액<sup>\*</sup>을 차감한 금액 이상

\* 결제시한 도래전의 대용증권 매도금액 가산

- (장중위탁증거금액)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(위탁증거금률적용)
  - + 당일결제금액 + 익일결제예정금액(장중 당일차금 + 장중 갱신차금 + 장중 옵션순매수대금)

- (예탁수단) 현행 증거금예탁수단과 동일

\* 현금, 대용증권, 외화, 외화증권 등

(예탁시한)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, 다만 위탁자 파악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 시각 이전까지 예탁시한 설정 가능

\* 예탁 이전까지 야간선물거래 참여 불가, 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의 경우 해외시장이지만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미예탁한 경우 익일 오전 장개시전 협의거래 시 수탁이 거부될 수 있음

(증거금 부과 통지 및 증거금 예탁시까지 조치)

- 회원은 추가 위탁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위탁자(사전 및 사후위탁증거금 계좌 모두 해당)에게 추가 위탁증거금 부과를 지체없이 통지(의무)

- 회원은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해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로 결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 거래의 수탁을 거부\*(의무)

- 기 제출된 미체결주문의 취소는 가능

\* 현행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시까지의 회원 조치와 동일

**※※ 회원은 약관의 장중추가증거금 미이행시 조치에 관한 사항에 “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수탁이 거부될 수 있음”에 대하여 약관 반영 필요**

-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과 별도로 이미 예정된 증거금의 추가예탁이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은 기준대로 수행, 즉 장중추가증거금이 오히려 감소해도 예정된 결제금액 납부\*

\* 예) 예탁액이 100인 마진콜 발생 투자자가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 ( $M_1$ ) 500,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, 장중 위탁증거금( $M_2$ )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, 예정된 추가예탁 400납부 필요

**□ (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 축소)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이 발생하는 사후위탁증거금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시점부터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위험노출액한도를 2배 이내로 축소**

**□ (예탁 불이행시 조치\*)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원이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예탁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또는 위탁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대용증권 등 매도 가능(임의)**

- 회원은 장중 추가예탁 발생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개시 시각에 반대매매 호가를 제출 하더라도 시가단일가시간 중 장중 추가예탁이 이행되는 경우 기 제출 반대매매호가 취소 가능

\* 현행 위탁증거금 예탁 불이행 시의 회원 조치와 동일

## 『사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(1)』

(상황 :  $M_1$ (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)  $\leq M_2$ (장중위탁증거금))

시각	상황	수탁 가능 여부	반대매매 가능 여부
전일 장종료	추가예탁 발생( $M_1$ )	거부	X
8시	$M_1$ 미예탁	거부	X
9시	장중추가예탁 발생( $M_2$ )	거부	X
12시	$M_1$ 예탁(결제이행)	거부	X
	$M_1$ 결제불이행	거부	○
24시*	$M_2$ 예탁(결제이행)	수탁가능	X
	$M_2$ 결제불이행	거부	○

\* 장중추가증거금 예탁시한(회원별 상이, 이하 같음)

## 『사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(2)』

(상황 :  $M_1$ (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)  $> M_2$ (장중위탁증거금))

시각	상황	수탁 가능 여부	반대매매 가능 여부
전일 장종료	추가예탁 발생( $M_1$ )	거부	X
8시	$M_1$ 미예탁	거부	X
9시	장중추가예탁 발생( $M_2$ )	거부	X
12시	$M_1$ 예탁(결제이행)	수탁가능	X
	$M_1$ 결제불이행	거부	○

\* 예탁액이 100인 마진콜 발생 투자자가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( $M_1$ ) 500,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, 장중위탁증거금( $M_2$ )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

## 『사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(3)』

(상황 :  $P_1$ (전일 장종료 기준 사후위탁증거금)  $\leq P_2$ (장중위탁증거금))

시각	상황	수탁 가능 여부	반대매매 여부
전일 장종료	사후위탁증거금 산출( $P_1$ )	수탁가능	X
8시	$P_1$ 미예탁	수탁가능	X
9시	장중추가예탁 발생( $P_2$ )	거부	X
10시	$P_1$ 예탁(결제이행)	거부	X
	$P_1$ 결제불이행	거부	○
24시	$P_2$ 예탁(결제이행)	수탁가능	X
	$P_2$ 결제불이행	거부	○

## 『사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(4)』

(상황 :  $P_1$ (전일 장종료 기준 사후위탁증거금) >  $P_2$ (장중위탁증거금))

시각	상황	수탁 가능 여부	반대매매 여부
전일 장종료	사후위탁증거금 산출( $P_1$ )	수탁가능	X
8시	$P_1$ 미예탁(결제이행)	수탁가능	X
9시	장중추가예탁 발생( $P_2$ )	거부	X
10시	$P_1$ 예탁(결제이행)	수탁가능	X
	$P_1$ 결제불이행	거부	O

\* 예탁액이 100인 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( $P_1$ ) 500,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, 장중위탁증거금( $P_2$ )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

**(증거금 부과해제 결정)**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부과 통지한 이후에도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 가능\*

\* 위탁자가 부과통지를 받은 후에 보유 미결제약정을 해소하거나 시장상황이 변동되어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

- 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시황 변동에 따른 증거금액 축소, 예탁금액 증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예탁총액>장중유지위탁증거금)에 한해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가 가능
- 회원은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해제의 근거 등을 내부 통제기준에 마련 필요

**(인출가능금액)** 모든 위탁계좌\*는 장중추가증거금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를 이용\*\*하여 산출된 사전위탁증거금 및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 가능

\*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 포함

## 2 증거금률 조정기준 개선(안)

- (현황) 매 분기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측정하여 내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증거금률 조정대상 상품을 선정하고, 주관적 요소<sup>\*</sup>를 감안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폭 결정

\* 국내외 시장상황, 가격변동성에 대한 전망, 상품별 투자자 분포 및 거래유동성, 가격변동성의 분포 특성 및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

- (문제점) 매 분기 정기점검 이외에 시장상황의 급변 등 발생 시, 증거금률 수시조정의 근거가 내부 가이드라인에 마련

- 그러나, 증거금률 수시조정의 기준, 절차 등이 특정되지 않아 큰 폭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증거금률 조정을 통한 대응이 곤란
-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( $15\% \rightarrow 30\%$ )에 따라 외부충격에 의한 가격변동 확대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
- (개선방안) 정기조정의 점검주기 개선 및 수시조정 기준 신설

① 정기조정의 점검주기 축소 : 매 분기 → 매월 또는 2개월

② 수시조정 세부기준 신설

- 가격변동성이 점차 상승하거나 가격의 갑작스런 폭락(crash) 발생 시, 내부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증거금률을 신속히 인상하여 증거금률의 적정성 및 적시성 제고

※ 증거금률 조정 시, 조정된 증거금률이 회원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전문형태로 전송할 예정

### **III. 과다호가부담금 징수기준 완화**

---

- **(현황)** 계좌별로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의 일별 호가건수가 거래량에 비해 과다<sup>\*</sup>한 경우 과다호가부담금(100만원)을 징수

\* ① (호가건수가 2만건 ~ 10만건 & 호가건수/약정수량이 20 이상) 또는  
② (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 & 호가건수/약정수량이 10 이상)인 경우  
\* (예외) 월 2회까지는 면제하되, ①의 수치가 100이상 이거나, ②의 수치가 50이상인 경우는 예외 없이 부담금을 징수

- **(개선)** 호가건수 기준을 10만건 이상으로 단일화하고, “호가건수/약정수량” 수치기준을 15로 상향

\* (예외) 월 2회까지는 면제하되, “호가건수/약정수량” 수치가 기준수치의 5배 이상인 경우는 예외 없이 부담금을 징수

### **IV. 향후 필요조치**

---

-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: '15. 4월 예정
- **(시행시기)**
- 가격안정화장치 및 장중추가증거금제도 : '15.6.15(월) 예정
  - 과다호가부담금 기준 완화 : '15.4월 예정

# 가격제한제도 변경 관련 주요 FAQ

**Q1**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·하한가에 도달하면 무조건 확대되나요?

- 네 그렇습니다.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·하한가에 도달하고 5분 이내에 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더라도 상·하한가 도달 후 5분 이후에 가격제한폭은 확대됩니다.
- 다만, 15시 이후에 체결가격이 상·하한가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지 않습니다.

**Q2** 가격제한폭과 관련한 호가적합성 점검은 당일 모든 상품에 대해 면제되나요?

- 가격제한폭 관련한 호가적합성 점검의무는 가격제한폭이 장 중에 확대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.

**Q3** 옵션 시장가매수 주문 등에 대한 위탁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(2/2일 설명회 후 내용 변경)

- 옵션 시장가,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의 매수 주문 제출시 위탁금액은 항상 해당상품 최대변경단계(3단계)의 상한가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.

**Q4** 5분 Cooling기간동안 다른 호가접수 가능한가요?

- 5분 동안은 별도의 시장조치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호가의 접수가 가능합니다.

#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징수 관련 주요 FAQ

## 1 장중 추가징수 시간, 횟수, 대상 등 요건 문의

Q1.1 장중 추가징수 기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(가격변동기준 시점)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 기준시점은 9시<sup>\*</sup>부터 14시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 하루 6번이며 해당시점에 코스피200이 가격변동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.

- \* 9시 정각에는 KOSPI200 시가가 결정되기 전이므로 9시 1분의 KOSPI200 가격을 적용
- 매 정각 사이 가격변동요건에 도달하였더라고 정각기준에 가격 변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하지 않습니다.

(예) 09시 01분 : 코스피200 전일대비 -3.5% 변동

09시 25분 : -5.2% 변동(유지위탁증거금률 80%이상)

10시 00분 : -2.8% 변동(유지위탁증거금률 80%이하)

- ▶ 9시와 10시 사이에 유지증거금률의 80%이상 변동하였으나 10시 기준 80% 이하로 변동하였으므로 10시 시점에는 가격변동요건 미충족

Q1.2 3년국채선물이나 달러선물 미결제만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장중추가증거금 적용대상인가요?

- (장중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계좌)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합니다.

-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전 금융시장에 영향이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전 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위탁증거금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모두 적용

- ▶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는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충격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의 가격변동으로 시장 충격여부를 판단합니다.

Q1.3

장중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은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해야 하나요?

- (산출용 파라미터 전송) 거래소는 최초로 가격변동요건에 도달한 경우에 모든 회원사에 증거금 파라미터<sup>\*</sup>를 전송합니다.(산출용)

\* 주식관련 상품 뿐 아니라 모든 파생상품의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

- 회원은 최초에 수신한 정보를 이용한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하여 증거금의 추가예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또한 이후 14시까지 매 정각에 발동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합니다. (점검용<sup>\*</sup>)

\* 회원은 점검용 파라미터를 이용한 위탁자의 증거금을 산출하여 추가예탁 여부를 결정하여도 됩니다.

#### <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시점>

가격변동요건 도달 시점	9시	10시	11시	12시	13시	14시
9~14시 미발생			전문	전송	없음	
9시 최초 발생	●	○	○	○	○	○
10시 최초 발생	×	●	○	○	○	○
11시 최초 발생	×	×	●	○	○	○
12시 최초 발생	×	×	×	●	○	○
13시 최초 발생	×	×	×	×	●	○
14시 최초 발생	×	×	×	×	×	●

\* ● : 추가예탁액 부과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(산출용)

○ : 추가예탁액 부과 해제 여부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(점검용)

## 2 통보시점 및 수탁거부 시점 문의

Q2.1

증거금 시스템 산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통보 시한이 있나요? 그리고 수탁거부 처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?

- 회원사는 장중 증거금 계산을 완료한 후 부과 요건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를 통보하고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 주문에 대한 수탁을 거부해야합니다.

- 회원사에 따라 파생상품 계좌 수, 시스템 상황 등이 다르므로 고객 통지 및 수탁거부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- \* 고객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장중 추가증거금에 의해 수탁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함(약관에 기재)
- 모든 계좌의 증거금 산출 후 부과요건 해당하는 계좌를 일괄적으로 수탁거부 처리할 수도 있고, 각 계좌별로 증거금 산출 후 수탁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.

### 3 추가예탁액 문의

**Q3.1** 장중 위탁증거금 산출시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과 결제 예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- 추가예탁액은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 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- 위탁증거금액은 미체결 주문의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,
- 기준 시점의 선물가격을 정산가격으로 사용하여 산출한 假 정산금액과 옵션순매수대금, 결제전 당일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.

◆ 장중 위탁증거금액 산출(사전증거금계좌 사후증거금계좌 동일)

-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
- 당일결제금액(결제전)
- 익일결제예정금액
  - ①장중 당일차금 + ②장중 갱신차금 + ③장중 옵션순매수대금
- \* 장중증거금 계산시 기초자산기준가격, 선물정산가격, 옵션증거금기준 가격은 산출시점의 가격을 사용

Q3.2

장중 추가증거금액이 발생한 계좌가 장종료 시점에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- 장종료 시점 기준으로 장중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\*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 해제가 가능합니다.

\* 유지위탁증거금액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액 < 예탁총액

Q3.3

전일 장종료 시점에 추가예탁이 발생한 계좌가 장중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(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)

- 전일 장종료 시점에 예정된 증거금의 추가예탁이나 사후위탁 증거금의 예탁은 기존대로 수행합니다.

※ 계좌별 발생 경우에 대해서는 본문 “예탁 불이행시 조치” 참조

(예) T-1일 장종료 시점의 추가예탁이 1,000만원이고 T일 9시 장중 추가 예탁액이 1,200만원 발생한 경우

- ▶ T일 12시 반대거래는 장종료 시점 추가예탁액(1,000만원)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전일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처리
- ▶ 반대거래 처리 또는 추가 납입 후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(장중 파라미터 적용)하여 부과 해제 가능

- 시장상황이 변동되어 전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계좌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(장중 파라미터 적용) 수준 이상이 되면 회원의 판단에 따라 수탁거부를 해제하고 반대거래를 미적용 할 수 있습니다.

(예) T-1일 장종료 시점의 예탁총액이 2,000만원, 위탁증거금이 3,500만원, 유지증거금이 2,500만원,

- ▶ T일 고객이 1,000만원을 입금하고(예탁총액은 3,000만원) 장중 파라미터 적용 시 위탁증거금이 2,800만원, 유지증거금이 1,900만원이 된 경우, 회원은 수탁거부를 해제하고 반대거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Q3.4

9시 기준에 산출한 추가예탁액이 이후 장중파라미터에 변동이 되나요?

- 최초 가격변동요건 발생 이후 수신한 증거금 파라미터로 재계산된 위탁증거금액은 증가(감소)되어도 추가증거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.\*

\* 부과요건 해제 여부 결정에만 사용

(예) 예탁총액이 2,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

- (9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) 위탁증거금액 4,500만원, 유지위탁증거금액 3,000만원 → 추가증거금액은 2,000만원 부과 통보 및 수탁거부
- (10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) 위탁증거금액 4,200만원, 유지위탁증거금액 2,800만원 → **추가증거금액은 2,000만원(변동 없음)**

Q3.5

국채선물, 통화선물, 돈육선물, 미니금선물 등 최종결제가격이 14시 전에 산출되거나 당일 장종료 후 산출되는 상품의 경우 장중추가증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?

□ (국채 · 통화 · 금선물) 최종결제가격이 최종거래일 중 14시 전에 산출되는 상품으로서 장중 추가증거금 산출일이,

- ① (최종거래일(T)인 경우) 최종결제가격이 이미 산출\*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않고,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 가격과 정산가격을 이용하여 장중 당일차금, 장중 갱신차금, 순위험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.

\* 국채선물, 통화선물, 금선물 모두 11시30분에 산출

\*\* 통화선물과 금선물은 최종결제가격이 당일 정산가격과 동일하여 사실상 최종결제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

② (T+1 이후인 경우) 국채선물과 통화 · 금선물의 추가증거금 산출방법이 상이

- (국채선물) 이미 산출된 최종결제가격을 이용하여 최종결제 차금을 산출하여 T+1일에는 당일결제금액에 포함
- (통화 · 금선물(실물인수도상품)) 인수도증거금의 경우(T+1 ~ T+2일)에는 이미 확정된 최종결제가격과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인수도증거금을 산출

□ (돈육선물, 미니금선물) 최종결제가격이 최종거래일 중 산출되지 않는 상품으로 장중 추가증거금 산출일이,

① (최종거래일(T)인 경우) 최종결제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과 정산가격을 이용하여 장중 당일차금, 장중 갱신차금, 순위험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.

② (T+1인 경우) 최종결제가격이 이미 산출되었어도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최종결제수량에 대한 최종결제확정전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.

③ (T+2인 경우) T+1일 장종료시점에 산출한 최종결제차금이 T+2일에는 당일결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.

## 4 사후증거금계좌의 적용 문의

Q4.1 사후증거금 계좌는 예탁총액의 5배까지 위험노출액 한도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는데 장중 추가증거금 요건이 발생하면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- 코스피200 가격변동이 급격히 커져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.
  - 또한, 장중 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된 사후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한도는 예탁총액의 2배로 감소합니다.
- ▶ (2배 적용 시점) 수탁거부시점부터 당일 정규시장 거래 중

Q4.2 사후증거금 미납계좌는 10시까지 신규주문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9시에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수탁거부 처리 되나요?

- 현행 사후증거금 미납계좌는 예탁시한(10시)까지 신규거래 및 반대거래가 가능하나 9시에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대상 계좌가 되면 신규거래 및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이 거부됩니다.

## 5 전일수신 및 장중수신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문의

Q5.1 장중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의 반대거래 체결시 어떤 파라미터로 증거금을 재계산 하나요?

- 장중 추가예탁 부과해제 및 인출가능금액 산출 이외의 경우에는 전일 장종료 파라미터 또는 장중 산출용 파라미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

Q5.2

인출가능금액 산출시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한 증거금을 사용해야 하나요? 인출시 인출가능총액과 현금도 제어를 해야하는 건가요?

- 모든 계좌는 “최초 발생시점의 장중 파라미터\*(산출용)”를 적용한 위탁증거금액을 사용하여 인출가능금액을 산출합니다.

\* 이 경우 미체결주문에 대해서도 산출용파라미터 적용

-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지 않은 위탁계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인출가능총액 및 인출가능현금 산출을 위해 인출시점의 위탁 증거금액 및 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.

Q5.3

부과 해제 후 전일 기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주문가능금액, 인출가능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?

- (주문가능금액) 부과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좌의 주문 가능금액 산출시에는 전일 장종료 파라미터 또는 장중 산출용 파라미터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(인출가능금액) 가격변동요건이 발생한 시점(최초 1회)의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모든 계좌에 적용합니다.

## 6 부과 해제 요건 문의

Q6.1 증거금 부과해제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위탁증거금 계좌 중 위탁자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?

-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 부과요건(예탁총액 <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)에 해당하는 모든 계좌는 고객 통지 및 수탁거부가 “의무”입니다. 따라서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점에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후 위탁증거금계좌는 수탁거부를 적용해야 합니다.
- ▶ 보유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계좌별로 부과해제 또는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미적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.
- 다만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반대거래로 보유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었거나 점검용파라미터 적용시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)에 한해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 가능

### ※ 부과해제 가능 예시

(예1) 전일 장종료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10시에 장중추가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원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12시 수신한 증거금 파라미터로 증거금 산출시 부과요건 미충족

▶ 부과해제 가능합니다.

(예2) 9시 예탁총액은 2,500만원

- (9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) 위탁증거금액 4,5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3,000만원  
→ 추가예탁액은 2,000만원 부과 통지
- (9시 30분 고객이 500만원 납입) 예탁총액 3,000만원
- (10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) 위탁증거금액 4,0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2,800만원

▶ 10시 부과해제 가능합니다.

**(예3) 장중 부과 해제 가능 여부 판단**

- 9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: 장중 부과 요건 해당
  - 10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: 장중 부과 요건 해당
  - 10시 30분 : 반대거래를 통해 9시 기준의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은 해소하였으나 10시 기준의 증거금은 부과요건에 해당
    - \* 9시 보다 10시 시장 변동이 더 크게 발생한 경우
  - 11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: 장중 부과 요건 미충족
- ▣ 회원은 9시 기준의 증거금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10시 30분 부과해제 가능하며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. 11시에 해제도 가능합니다.

Q6.2

장중 증거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거부 예외적용이 가능한가?

- 네. 가능합니다.

7

## 반대거래 문의

Q7.1

반대거래가 회원사 임의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거래를 하지 않거나 전일 장중 부과 발생한 계좌에 대해 12시에 반대거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?

- 장중 추가예탁 불이행 계좌에 대한 반대거래는 회원사 자율에 의해 처리하며 반대거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- 전일 장종료 시점에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와 같이 12시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  - 장중 또는 전일 장종료 기준 추가예탁 불이행 계좌에 대한 반대거래는 위탁자 과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회원사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.